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3

발의연월일: 2020. 6. 23.

발 의 자 : 용혜인 · 윤재갑 · 강은미

박주민ㆍ이수진비ㆍ박용진

박성준 · 김경만 · 정성호

양이원영·장혜영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선거상의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, 후보 등록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기탁금이 대통령선거의 경우 3억원, 지역구국회의원선 거 1천500만원 등으로 정해진 바, 이러한 높은 기탁금 기준이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. 특히 2018년 기준 20대 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209만 원에 그치는 등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이약한 가운데 현행 기탁금 제도 유지는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.

이에 각종 선거에 등록하는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종전의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(안 제5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기탁금"을 "기탁금(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탁금의 적용례)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예비후보자등록 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(기탁금) ① 후보자등록을	제56조(기탁금) ①
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	
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	
<u>기탁금</u> 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	기탁금(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
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	<u>자의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</u>
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	에는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
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예비후	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
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	<u>로 한다)</u>
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	l
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	
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	
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